화 성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10호

2026년 11월 12일 (목)

차 례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36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시송달 공고(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공고 제2026-3729호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6-3730호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고 제2026-3735호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6-373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6호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218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굴착)서신 제2026-100호, 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 서신면 광평리 199-35번지]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80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문○우)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8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66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 공고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47호	2026년 10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48호	2026년 10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26-877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1단계) -
화성시 고시 제2026-878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작성 고시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2단계) -

회 람									

발행 : 화 성 시 편집 : 언론담당관

화성시 공고 제2026 - 36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시송달 공고(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12.

화성시장 화성시장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개요

구분	종류	노선 번호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시도	제2호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 남양읍 송림리	1,035,509.5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송림리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제암리 팔탄면 매곡리,고주리 덕천리,덕우리 노하리 남양읍 온석리,무송리 활초리,남양리 북양리,송림리	1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개설을 통해 국도39호선, 지방도318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지·정체 해소 및 지역 내 교통혼잡 개선

3. 사업개요

○ 사업명: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
○ 사업내용: L=15.4km, B=20m(왕복4차로)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별관2층 도로과(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5. 공시송달 사유

○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가 불가하여 해당공고로 통지 갈음

6.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고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로과 민자도로팀(031-5189-2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고 제2026-3729호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이 조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등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2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말 등 작업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인 경우	<삭 제>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 ③ (생 략)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이 조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등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성시공고 제2026-3730호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을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4조제4항”을 “조례 제24조의2”로, “판매 등”을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대행자”를 “제작·유통·판매 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판매대행”을 “제작·유통·판매 대행”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시장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 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화성시(이하	제12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 조례 제24조의2----------

“시”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

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를 시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함에 있어 공급상황과 판매소 봉투판매상황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배송해야하며, 각 판매소별 배송일정 외에 별도로 판매소에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⑤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에 수반하는 종량제봉투 보관과 시설·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 ⑥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대행업소 운영에 있어 종사원 교체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① 시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의 지도·감	<삭 제>	

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수불상황을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판매소의 종량제봉투 구입 등) ① 대행자는 판매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구입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별표 6과 별표 7의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이 명시된 공급전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전표 상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판매대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여부를 확인한 대행자는 판매대금 수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화성시 공고 제2026-3735호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관광 조례는 여행 프로그램을 시티투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생태관광은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행프로그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여행프로그램과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한 사항을 개정, 신설함
(안 제12조의 제목, 제1항～제3항).

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티투어에서 여행프로그램으로 개정함
(안 제12조의2 제목).

라. 화성시 위탁 관광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일부 개정함
(안 제16조 제1항제2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11. 12.(목) ~ 2026. 12. 2.(수)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12.(목) ~ 2026. 12. 2.(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관광진흥과과 관광정책팀

○ 주　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화성시청 관광진흥과

○ 연락처: 031)5189-6017 / FAX 031)5189-1891 / 이메일 spiner@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화성시조례 제2026-3735호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행프로그램”이란 화성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연계한 화성시 시티투어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2조의 제목 “(시티투어의 운영)”을 “(여행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성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화성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을 “여행프로그램을 개발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티투어”를 각각 “여행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을 “(여행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 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여행프로그램”이란 화성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연계한 화성시 시티투어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2조(시티투어의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화성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화성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여행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① ---------- 여행프로그램을 개발 및 ----------.
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 여행프로그램 ---------- 여행프로그램 ----------.

③ 시티투어의 운영시간, 예약 방법, 운행불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여행프로그램 ----------.
제12조의2(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① ~ ④ (생 략)	제12조의2(여행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티투어운영	2.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소 관 부 서 명		관광진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관광진흥과장 김 명 숙
	팀 장 직위·성명	관광정책팀장 황 순 홍
	담 당 자 성명(전화)	곽 대 진 (031-5189-6017)

참고 **현행 자치법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4. 23 조례 제 850호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25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1507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7. 15 조례 제1941호
일부개정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4. 5 조례 제2236호
일부개정 2025. 11. 12 조례 제2498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25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화성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4, 2017. 9. 29)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및 비영리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3. 5. 16)

4.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8. 4]

제4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쾌적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선진 관광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문화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되 연동계획으로 한다.

② 관광문화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서비스 문화·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문화도시 조성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광 관점적 반영 사항
5. 5대 핵심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부분·거점(내륙, 해안, 농촌, 생태체험)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티투어의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화성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화성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의 운영시간, 예약방법, 운행불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2021. 7. 19, 2023. 5. 16, 2023. 6. 28)

1.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상 8세 이하의 어린이
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6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2024. 4. 5)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9. 8. 2, 개정 2024. 4. 5, 2025. 11. 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3.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뇌사기증자 및 사후기증자의 유가족(기증자 기준 부모, 자녀,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본조신설 2017. 9. 29]

제13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

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적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문화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3조의2(화성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화성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역의 관광을 위한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4.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그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5]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15조(지원범위) ①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법 제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6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4)

제17조 삭제 (2025.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2. 7. 1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8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15조의2 관련)

시설 구분	종류	구비기준
1. 공공편익시설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2. 관광안내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테마파크시설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테마파크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펜션,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	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하나 이상일 것

비고: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소 관 부 서 명		관광진흥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관광진흥과장 김 명 숙
	팀 장 직위·성명	관광정책팀장 황 순 홍
	담 당 자 성명(전화)	곽 대 진 (031-5189-6017)

화성시 공고 제2026-373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관한 자치법규의 규정을 정비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대신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업무처리 근거 신설

나. 별지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명시

다. 개정 대상: 5개 조례

○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입법예고기간: 2026. 11. 12.(목) ~ 2026. 12. 2.(수)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12.(목) ~ 2026. 12. 2.(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민원여권과 민원개선팀

○ 주 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민원여권과

○ 연락처: 031)5189-2703 / FAX 031)5189-1508 / 이메일 ahj53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화성시조례 제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조(「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제4조(「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5조(「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명		민원여권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민원여권과장 정 회 정
	팀 장 직위·성명	민원개선팀장 박 선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희 진 (031-5189-2703)

[별지 1]

■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및 연락처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및 연락처	☎		
	관계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 분	신청인	효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2]

■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건축물 소유자 성명			
개량장소 (주 소)			
전화번호		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
건축물의 종 류	□ 아파트 □ 빌라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구분	□ 교체 □ 갱생 □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공사의 범위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2. 시공도면 1부 3.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명) 1부 4.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참고)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3]

■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지원신청명세	대 상 지			
	총공사비	원	건물규모	연면적 ㎡ (지하 / 지상)
	적용대상 총공사비	원		
	지원 신청액	원		
	공사기간			

위와 같이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7.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4]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5]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감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감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6]

■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단체명	(고유번호 : 등록일 :)		

신청사항	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칭	
	위 치(소재지)	
	예정 특화거리 음식점 수	
	예정 특화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② (생 략) <신 설>	제5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신청) ①(생 략)	제5조(사업신청) ①(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③(생 략)	③·④(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권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13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신고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

	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① －－－－－－－－－－－－－－－－－－ －－－－－－－－－－－－－－－－－－ －－－－－－－－－－－－－－－－－－ －－－－－－－－－－－－－－－－－－ －－－－－－－－－－－－－－－－－－ －－－－－－－－－－－－－－－－－－ －－－－－－－－－－－－－－－－－－ －－－－－－－－－－－－－－－－－－ －－－－－－－.
<신 설>	1.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6호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화 성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화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 화성농업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개정내용

가. 조례 제명을 「화성시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비(안 제1조~제2조).

다. 시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라. 시설 운영 및 사용, 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농업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바. 시험분석 수수료 부과·감면 및 분석 거부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사. 시험·연구 등에 따른 생산물의 관리·처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1조).

4. 개정규칙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12. ~ 2026. 12. 2.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jihyun296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기획팀

1)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2) 전 화 : (031)5189-3605 FAX : (031)5189-151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성시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미래 농업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화성시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화성시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농업교육·훈련 시설(실습교육 시설을 포함한다)
2. 지역 특화작목 시험포(신품종 및 품목 개발 시설을 포함한다)
3. 작목별 품종 전시 및 실증포
4. 우량종자, 종묘 및 묘목 등의 생산 시설
5.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시설

6. 농업기상 관측 시설

7.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분석 시설

8. 쌀 품종 및 품질 분석 시설

9. 초유은행 및 가축분뇨 분석 시설

10. 농업용 미생물 및 BM 활성수 생산 시설

11. 농식품 가공조리 및 제조연구 개발 시설

12. 농업문화교육관(치유농업지원센터)

13. 반려식물 치료 센터

14. 농기계 임대사업장

15. 과수명품화사업소

16. 도시농업지원센터

17.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시설

② 화성시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시험연구

2.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지도

3.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과 연구개발

4.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역농업 개발 및 경쟁력 향상

제5조(운영 및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는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교육·체험) ① 시장은 제4조 제2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체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작물 재배기술 교육

2. 축산 사육 관리 교육

3. 농기계 교육 및 안전관리

4.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교육

5. 농산물 가공 및 전통식문화 교육

6.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교육

7. 진로체험 및 농업체험 교육

8.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

② 시민 교육·체험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체험 참여자에게 시 명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급) ① 시장은 제4조 제2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보급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기술보급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기술보급

3.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기술보급

4.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보급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우량 종자·종묘 등의 생산 및 보급

7. 도시농업, 치유농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업, 농촌과 관련된 조사·연구·기술보급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설문조사 등의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명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험분석 수수료) ① 시장은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또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적용되지 않는 분석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
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화성시 소속 공기업이거나 출자 또는 출연기관으로 지역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관내농협 또는 미곡처리시설이 지역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5. 재난, 농업재해,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분석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업기술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시험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분석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생산물의 처리) ① 제4조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용: 매각하기 위한 생산물

2. 연구지도용: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에 사용되는 생산물

3. 교육체험용: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민 교육·체험에 사용되는 생산물

4. 시민보급용: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경우

5. 경관조성용: 공공시설 또는 공공용 시설에 전시, 경관조성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산물

6. 폐기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여 폐기하는 생산물

② 시민보급용은 유상보급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생산물과 무상보급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생산물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물의 관리 및 처리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농업 연구·교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소재지	비고
농업교육·훈련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지역 특화작목 시험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작목별 품종 전시 및 실증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우량종자, 종묘, 묘목 등의 생산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농업기상 관측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농업용수,잔류농약,중금속 등의 분석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쌀 품종 및 품질 분석 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초유은행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농업용 미생물 및 BM 활성수 생산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농식품 가공조리 및 제조연구개발시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농업문화교육관(치유농업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반려식물 치료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1로 14	
도시농업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1로 14	
농기계임대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버들로 1613	
과수명품화사업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사강로 92	

분석 수수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분석 수수료	1건	무료 ~ 상한 500,000	

생산물의 종류와 무상 보급 대상(제11조 제2항 관련)

생 산 물	대 상
유용미생물·BM 활성수	1. 화성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가축사육시설 포함)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며, 화성시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활용 교육을 받은 농업경영체 2.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주말농장 또는 도시텃밭을 운영하며 화성시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활용 교육을 받은 자
초유	1. 화성시에서 한우·젖소·염소·사슴·양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종자, 종묘	1.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로서 직접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체험에 참여하는 참여자 3.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설문조사의 대상자
농산물, 가공품	1.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체험에 참여하는 참여자 2.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설문조사의 대상자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218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만세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
점용의 목적	상수관 매설	점용기간	허가일 ~ 영구
점용의 장소	만세구 서신면 광평리 199-35번지 (광평리 199-36번지 앞)	점용면적	일시점용 : 9㎡ 영구점용 : 0.03㎡
점용물의 종류	차도 외	공사기간	착공일 ~ 1일간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차도 굴착
점용자의 주소·성명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그 밖의 사항	(굴착)서신 제2026-100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문○우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 위	용 도	구 조	면 적 (㎡)	시정요구기한
문○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22, 1403동 130*호(호매실동, 호매실마을14단지벨섬시티)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송라리541-*	형질변경	야적장 (고물상)	고물상	436	2026. 11. 30.

5. 공고기간 : 2026. 11. 12. ~ 2026. 11 .26.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홍현아	전화번호	031-5189-7719

화성시 효행구청 공고 제2026-58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12.

화성시 효행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1. 12.(목) ~ 2026. 11. 26.(목)
2. 과태료처분 대상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부과원인	부과금액
체력단련장업	그리드짐	이*혁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3길 ****	체육지도자 미배치(3차)	**과태료 100만원**

3. 납부기한: 2026. 11. 30.(월)
4.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상단 “납부” 메뉴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 수입 납부대상 → 로그인 → 조회 및 납부
5.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2026. 11. 27.)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FAX(031-5189-7535), 이메일(ksw1208@korea.kr)
7. 문의처: 화성시 효행구청(봉담읍 최루백로 165)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5189-7516)

이 의 제 기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효행구 자치행정과	납입고지서번호	
	위반일시		과태료금액	
	통지일자	년 월 일		
	과태료처분 사 유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화성시 효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66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1. 부서 : 병점구 경제환경과
2. 위탁업무명 : 환경개선부담금
3. 위탁업무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11월) 고지서 제작 및 인쇄
4.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5. 수탁기관 : 신진에이티디주식회사
6. 위탁기간 : 2026. 11. 11. ~ 11. 15.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47호

공 시 송 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안*명 외 96인(기재내용 별첨)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공원로 *** 외 96개 장소(기재내용 별첨)
○ 서류의 명칭: 2026년 10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2026년 10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기재내용 별첨)
○ 공 고 기 간: 2026. 11. 12. ~ 2026. 11. 26.(14일간)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중에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기타 등의 반송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우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세물건을 확인하시고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에서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화성시장) 및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동탄구청 지방소득세팀 (T. 031-5189-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2일

화성시 동탄구청장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48호

공 시 송 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박* 외 144인(기재내용 별첨)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 외 144개 장소(기재내용 별첨)

○ 서류의 명칭: 2026년 10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2026년 10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반송분(기재내용 별첨)

○ 공 고 기 간: 2026. 11. 12. ~ 2026. 11. 26.(14일간)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중에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기타 등의 반송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우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세물건을 확인하시고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에서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화성시장) 및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동탄구청 지방소득세팀 (T. 031-5189-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2일

화성시 동탄구청장

화성시 고시 제2026-877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1단계) -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2017.06.0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작성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026. 11. 12.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개요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 면적변경 - 당초) 115,870㎡ - 변경) 115,982㎡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작성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1단계)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시행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54,750	증) 10	54,760	-	1단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 면적변경 - 당초) 54,750㎡ - 변경) 54,760㎡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8.01.09.~2022.12.31. - 변경:2018.01.09.~2028.12.31.	• 국유지 매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화성특례시장

○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2018년 01월 09일

○ 준공예정일 : 2028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031-5189-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계(기정)					66,589	54,750							
소계(변경)					65,903	54,760							
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89	답	3,512	3,512	화성시	-					
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89-1	답	1,926	1,926	화성시	-					
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0	답	4,875	4,875	화성시	-					
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1	답	4,978	4,978	화성시	-					
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2	답	4,988	4,988	화성시	-					
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3	답	4,932	4,932	화성시	-					
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4	답	1,007	1,007	화성시	-					
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4-1	답	1,340	1,340	화성시	-					
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5	답	484	484	화성시	-					
10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5-1	답	2,168	2,168	화성시	-					
1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6	답	2,809	2,809	화성시	-					
1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6-1	답	2,343	2,343	화성시	-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722	1,025	국(농수산부)	-					
13	변경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441	1,032	화성시	-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300	구	628	220	국(농수산부)	-					
14	변경	장안면 독정리	1300	구	223	223	화성시	-					
1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1	답	1,135	1,071	화성시	-					
1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2	답	5,054	4,453	화성시	-					
1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	답	1,272	1,078	화성시	-					
1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1	답	531	479	화성시	-					
1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2	답	2,756	2,588	화성시	-					
20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3	답	3,007	2,824	화성시	-					
2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4	답	484	430	화성시	-					
2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2-1	답	1,887	1,655	화성시	-					
2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3	답	3,096	2,501	화성시	-					
2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4	답	2,932	718	화성시	-					
2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5	답	1,626	210	화성시	-					
2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6	답	5,097	136	화성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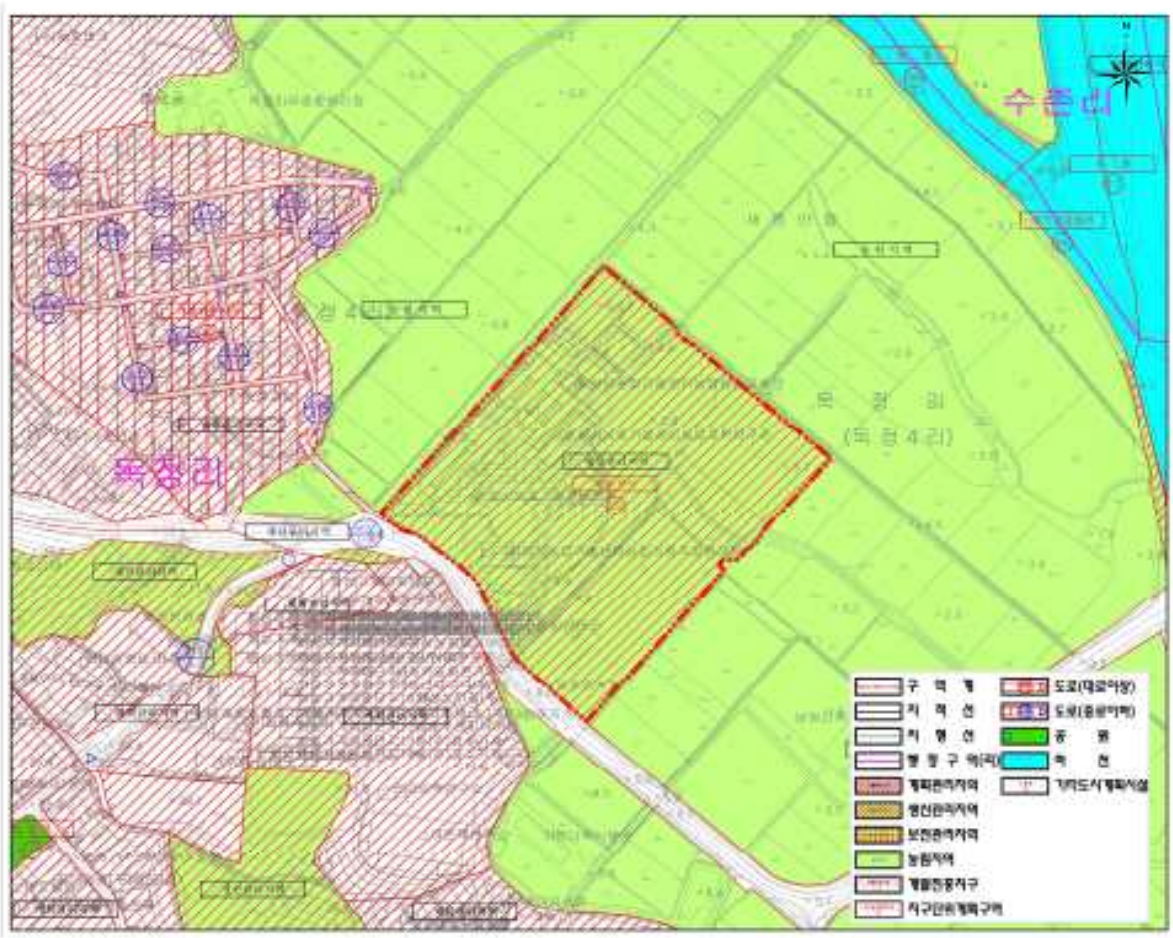
1 위치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단계별 계획도(변경없음)



화성시 고시 제2026 - 878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작성 고시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2단계) -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2017.06.0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작성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026. 11. 12.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개요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 면적변경 - 당초) 115,870㎡ - 변경) 115,982㎡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작성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2단계)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시행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61,120	증) 102	61,222	-	2단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 면적변경 - 당초) 61,120㎡ - 변경) 61,222㎡ (증 102㎡)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20.06.17.~2023.06.30. - 변경:2020.06.17.~2028.12.31.	• 국유지 매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화성특례시장

○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2020년 06월 17일

○ 준공예정일 : 2028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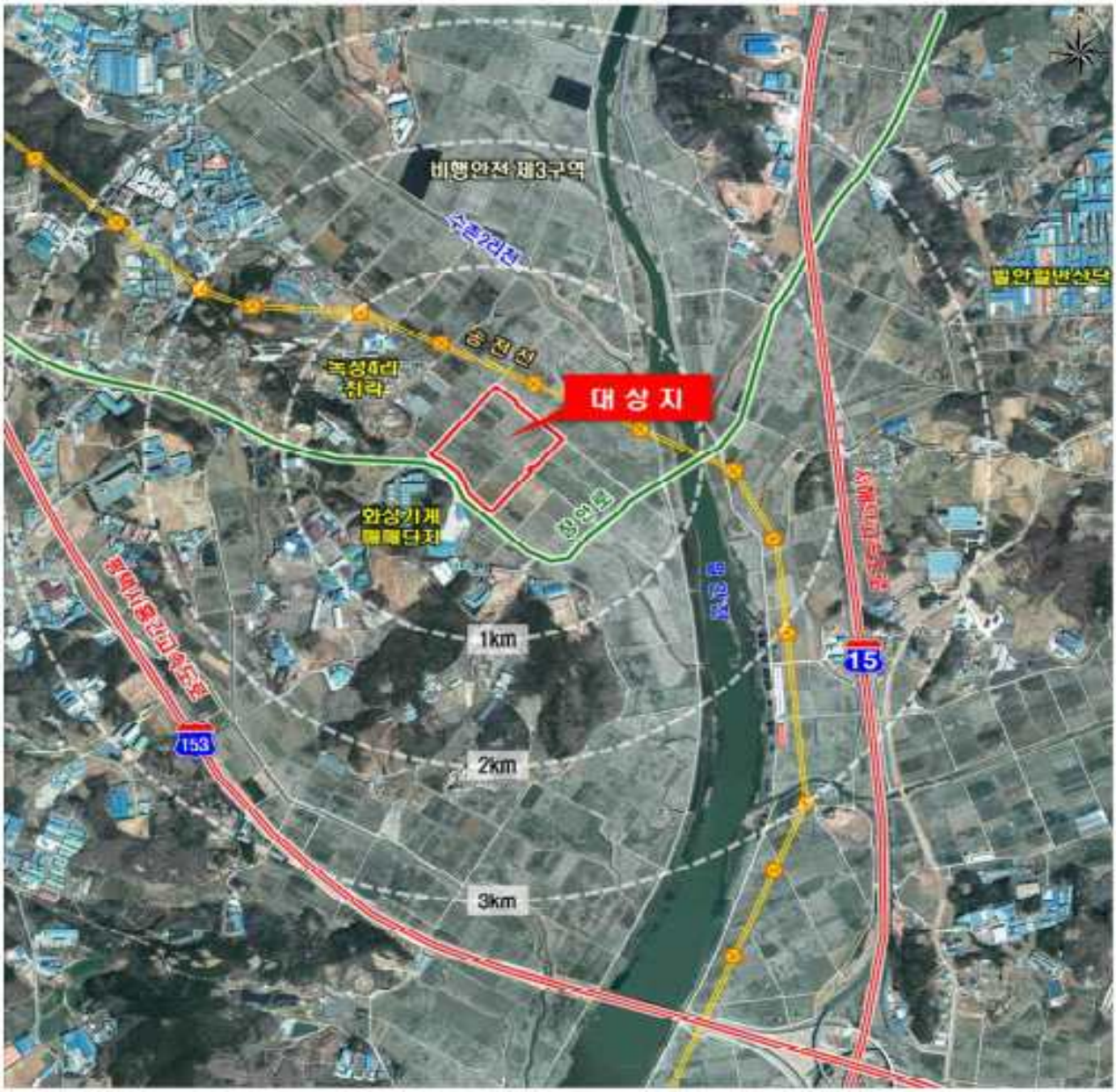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031-5189-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기정)					100,439	61,120							
소 계(변경)					80,397	61,222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722	409	국(농림축산식품부)	-					
1	변경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441	409	화성시						
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1	답	1,135	64	화성시	-					
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2	답	5,054	601	화성시	-					
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	답	1,272	194	화성시	-					
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1	답	531	52	화성시	-					
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2	답	2,756	168	화성시	-					
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3	답	3,007	183	화성시	-					
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4	답	484	54	화성시	-					
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2-1	답	1,887	232	화성시	-					
10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3	답	3,096	595	화성시	-					
1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4	답	2,932	2,214	화성시	-					
1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5	답	1,626	1,416	화성시	-					
1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6	답	5,097	4,961	화성시	-					
1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7	답	3,922	3,922	화성시	-					
1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8	답	3,697	3,697	화성시	-					
1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9	답	3,208	3,208	화성시	-					
1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10	답	3,133	3,133	화성시	-					
1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11	답	1,695	1,695	화성시	-					
1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12	답	5,200	5,200	화성시	-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394	유	24,419	4,728	국(농림축산식품부)	-					
20	변경	장안면 독정리	1394-3	유	4,807	4,807	국(기획재정부)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417	구	1,556	1,468	국(농림축산식품부)	-					
21	변경	장안면 독정리	1417	구	1,472	1,472	국(기획재정부)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418	도	1,075	991	국(농림축산식품부)	-					
22	변경	장안면 독정리	1418	도	1,010	1,010	국(기획재정부)						
2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19	답	3,506	3,506	화성시	-					
2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0	답	4,868	4,868	화성시	-					
2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1	답	4,821	4,821	화성시	-					
2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2	답	2,580	2,580	화성시						
2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2-1	답	2,418	2,418	화성시						
2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2-2	답	3,742	3,742	화성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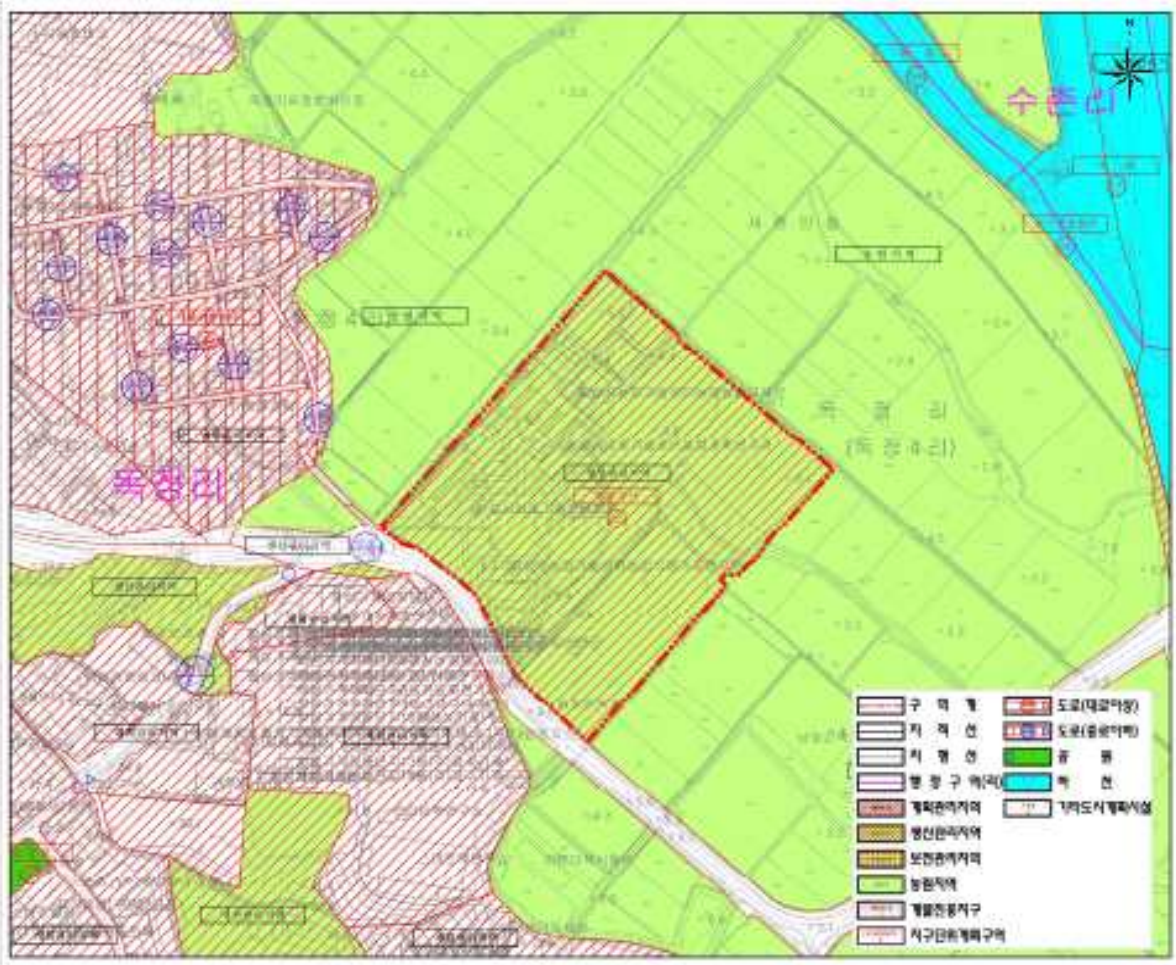
1 위치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단계별 계획도(변경없음)

